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122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10월 18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10. 18. ~ 2023. 10. 31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최덕환	1963.○.08.	0178200274100003579	₩31,860,000	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○○
2	전종상	1960.○.02.	0178200274100003586	₩31,860,000	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○○
3	합자회사 아루키플라워	191413-0001293	0178200274100011082	₩29,736,000	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별로 236
4	합자회사 앤디크로우	180113-0016126	0178210274100005041	₩29,301,040	부산 금정구 안동로7번길 45, 203 호
5	합자회사 하나파워	180113-0015996	0178200274100011085	₩29,736,000	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, 828 호
6	합자회사 브라보 정보미디어	180113-0016192	0178200274100011086	₩29,736,000	부산 중구 대천로126번길 23, 503 호
7	유한회사 석준레저	164214-0000498	0178200274100004603	₩739,500	충남 금산군 금산읍 유림길 2, 102 호
8	주식회사 삼배	230111-0197789	0178200274100004424	₩11,947,500	울산 중구 젊음의길3거리 11
9	강희승	1971.○.18.	0178200274100008147	₩2,911,800	대구 남구 장전9길 ○○
10	장호영	1993.○.06.	0178220274100001379	₩2,708,000	대구 서구 통학로49길 ○○
11	안창민	1996.○.17.	0178230274100000058	₩4,042,500	대구 중구 중앙대로67길 ○○
12	전윤철	1983.○.21.	0178210274100002348	₩475,280	대구 수성구 동원로 ○○
13	지연희	1980.○.08.	0178220274100001585	₩2,047,240	대구 북구 대현남로6길 ○○
14	주식회사 엠제이피	170111-0711491	0178220274100001586	₩4,456,600	경북 구미시 송동로 88, 2층 (24호,25호,26호)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5	주식회사 엔케이즈	170111-0334441	0178200274100004266	₩11,505,000	대구 중구 남산로 49, 301호
16	주식회사 케이알씨엔비	170111-0662462	0178200274100003350	₩6,067,500	대구 달서구 조암로 105(그루조암타워 분양사무소)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4, 1207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료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체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